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92호 2019. 4. 10.(수)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37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 2
거창군 고시 제2019-38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2-76호선, 소로2-58호선, 소로2-60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7
거창군 고시 제2019-39호 도로명주소 고시 ····· 9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452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 10
거창군 공고 제2019-468호 거창군 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1
거창군 공고 제2019-470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5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1호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18

회람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9 - 37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4.

거 창 군 수

1. 예 고 명 :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2. 예고 목적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기간 : 2019. 4. 4. ~ 2019. 4. 24. (20일간)
5. 공고방법 : 공보,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민원소통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9. 4. 5. ~ 2019. 4. 24.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FAX: 055-940-328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29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붙임 2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낭독용]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따라 제공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의견서

행정예고명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의 견 제출내용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납세자권리헌장제정 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고시 제2019 - 38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2-76호선, 소로2-58호선, 소로2-60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43호('85.03.11)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소로2-76호선, 소로2-58호선, 소로2-60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04월 10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면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계획시설	대평리 상아맨션 인근(소로2-76호선 외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대평	소로	2	76	80	8	611	거창읍 대평리 566-4	거창읍 대평리 445-15	경고43호 ('85.03.11)	
					2	58	37	8	366	거창읍 대평리 565-5	거창읍 대평리 566-4	경고43호 ('85.03.11)	
					2	60	84	8	756	거창읍 대평리 566-4	거창읍 대평리 564-5	경고43호 ('85.03.1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대평리 상아맨션(소로2-76호선 외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소로 2-76호선 토지편입조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470	611					
1	거창읍 대평리	445-15	하천	68	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한국토지신탁			소로 2-76
2	거창읍 대평리	465-8	하천	7	7		(국)농림축산식품부			소로 2-76
3	거창읍 대평리	445-12	하천	129	129		거창군			소로 2-76

4	거창읍 대평리	446-3	하천	279	81	웅양면 한기리 458	김용태			소로 2-76
5	거창읍 대평리	445-11	하천	48	48		거창군			소로 2-76
6	거창읍 대평리	595-1	도	3,690	43		(국)농림축산식품부			소로 2-76
7	거창읍 대평리	565-4	대	249	235		거창군			소로 2-76

□ 소로2-58호선 토지편입조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400	336					
8	거창읍 대평리	566-4	도	1,400	336		거창군			소로 2-58

□ 소로2-60호선 토지편입조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56	756					
9	거창읍 대평리	565-5	답	490	49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27-8	이호조외1인			소로 2-60
10	거창읍 대평리	564-5	도	266	26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27-8	이호조외1인			소로 2-60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055- 940-3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19 - 3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0.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59-11 등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붙임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19 - 452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5.

거 창 군 수

1. 사업지구의 명칭 : 2017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 완대·창선지구
2. 사업시행자 : 거 창 군 수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351필, 267,776.1㎡
   가. 완대지구 : 139필, 64,234.8㎡
   나. 창선지구 : 212필, 203,541.3㎡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19. 4. 5. ~ 2019. 4. 19. / 14일간
6. 공람장소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7. 공람 비치서류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

별도붙임 지적확정조서 2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19-468호

거창군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1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7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교통광장)
   ○ 명 칭 :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 개요

종류	위 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교통광장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79-1번지 일원	26,870	20,079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 1. 31	거고 제2008-43호 (2008.9.17.)	

4. 사업 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건설과장)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8.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48,947	20,079					
1	거창읍 대평리	888-1	답	2,003	2,003		거창군			
2	거창읍 대평리	874	답	1,997	1,997		거창군			
3	거창읍 대평리	868-1	도	632	265		국(농림수산부)			국
4	거창읍 대평리	10-2	구	28,732	1,025		국(농림수산부)			국
5	거창읍 대평리	820	답	1,706	1,706		거창군			
6	거창읍 대평리	806	답	517	147		거창군			
7	거창읍 대평리	807	답	245	245		국(국토교통부)			국
8	거창읍 대평리	821	답	2,202	2,202		거창군			
9	거창읍 대평리	808	답	750	750		거창군			국
10	거창읍 대평리	810-1	답	160	160		거창군			
11	거창읍 대평리	810-10	답	319	319		국(국토교통부)			국
12	거창읍 대평리	868-2	도	56	56		국(농림수산부)			국
13	거창읍 대평리	879-3	도	493	493		거창군			국
14	거창읍 대평리	879-1	도	1,314	1,314		국(국토교통부)			국
15	거창읍 대평리	879	답	129	129		국(국토교통부)			국
16	거창읍 대평리	878-2	답	131	131		국(국토교통부)			국
17	거창읍 대평리	878-1	답	262	262		거창군			
18	거창읍 대평리	878	답	360	360		거창군			
19	거창읍 대평리	877	답	258	258		거창군			
20	거창읍 대평리	876	답	1,028	1,028		거창군			
21	거창읍 대평리	875	답	1,028	1,028		거창군			
22	거창읍 대평리	892	답	123	123		국(국토교통부)			국
23	거창읍 대평리	891-1	답	148	148		국(국토교통부)			국
24	거창읍 대평리	891	답	880	880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	유우연			
25	거창읍 대평리	890	답	1,005	1,005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	유우연			

26	거창읍 대평리	889	답	1,005	1,005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	유우연			
27	거창읍 대평리	810-6	도	14	14		국(국토교통부)			국
28	거창읍 대평리	810-7	답	183	183		거창군			국
29	거창읍 대평리	808-5	답	270	270		국(국토해양부)			국
30	거창읍 대평리	808-7	답	442	442		국(국토교통부)			국
31	거창읍 대평리	821-1	답	36	36		국(국토해양부)			국
32	거창읍 대평리	807-5	답	519	95		국(국토해양부)			국

거창군 공고 제2019-47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덕유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1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주차장)
   ○ 명 칭 : 덕유산등산로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3. 사업시행 개요

종류	위 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교통시설 (주차장)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83번지	5,335	부지면적:3,296㎡ - 건축면적:86.52㎡ - 연면적:42.0㎡ - 증축 9.5㎡	실시계획인가일 로부터 ~ 2019. 6. 30	거고 제2008-43호 (2008.9.17.)	

4. 사업 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환경과장)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8.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3,296	3,296					
1	북상면 월성리	1783	차	3,296	3,296		거창군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1호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10:00
2. 집회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4월 18일

거창군의회 의장 이 홍 희